

서울특별시영등포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증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5. 7. 11.

사회건설위원회

1. 審査經過

- 가. 제출일자 : 2005년 6월 22일
- 나. 제출자 : 영등포구청장 제출
- 다. 회부일자 : 2005년 7월 1일 회부
- 라. 상정일자 : 제114회(정례회) 제1차 위원회(2005년 7월 4일) 상정 의결

2. 提案說明의 要旨 (제안설명자 : 생활복지국장 조 유 근)

가. 개정이유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일부사항 조정과 지난 1년 간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지속적으로 법령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자를 근절하고 지도·점검에 의한 과태료 부과와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반횟수와 상관없이 항상 1차 위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 삭제(안 제8조제1항)
- 대규모 점포와 도·소매업소에서 A4 규격 또는 1,000세제곱센티미터 이하의 종이 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신고포상금 제외대상에서 삭제(안 제9조제2호)
- 신고포상금은 현금 이외에 상품권 등 현물로도 지급 가능하도록 함 (안 제14조제3항)
- 신고자가 영등포구민이 아닌 경우 신고포상금 지급제외 (안 제15조제1항제8호 신설)

3.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專門委員 이 남 식)

- 본 조례안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일부사항 조정과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중인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 안 제8조 제1항의 삭제는 주민의 신고에 의한 과태료부과와 지도 점검에 의한 과태료부과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함이며,

- 안 제9조 제2호 삭제는 환경부고시에 의거 1회용품사용규제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신고포상금지급 제외대상에서 삭제하는 사항임.
- 안 제14조 제3항 신고포상금 지급방법은 현금 이외에 상품권 등 현물로도 지급 가능하도록 하였고,
- 안 제15조 제1항 제8호에 신고자가 영등포구민이 아닌 경우 신고포상금 지급 제외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 안 별표1 과태료부과 금액 「10만원 이상 300만원」을 「5만원 이상 100만원」으로 하고, 신고포상금 「3만원 이상 30만원」을 「2만원 이상 15만원」으로 하향조정은 관련 법령의 근거에 의거 사업주 부담을 완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 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 됨.

4. 審査結課 : 原案可決

서울특별시영등포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63
----------	-----

제출년월일 : 2005. 6.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개정이유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2004.12.30)에 따른 일부 사항 조정과 지난 1년간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안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가. 규제대상 사업장의 규모와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 및 신고포상금 지급금액을 차등화 하기위해 「별표1」을 개정(제2조,제7조)
- 나. 제2조 와 제8조제1항의 과태료 부과기준이 중복되어 제8조제1항은 삭제(안 제8조)
- 다. 신고포상금 제외 대상을 대규모 점포와 도·소매업소에서 A4 규격 또는 1,000입방센티미터 이하의 종이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1회용품 사용규제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신고포상금 지급제외대상에서 삭제(안 제9조)
- 라. 신고포상금을 현금 이외에 지역 상품권 등 현물로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 마.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을 영등포구 구민으로 한정하여 지급(안 제15조)

3. 참고사항

- 가. 관련근거 : 환경부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 개정통보
[환경부 폐기물정책과 - 4686(2004.12.30)]
-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다. 입법예고 : 2005. 3.7 ~2005.3.26(20일)
-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구청장” 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 으로 한다.

제8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9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14조제3항중 “지급한다” 를 “지급하고, 현금이외에 상품권 등 현물로도 지급할 수 있다” 로 한다.

제15조제1항제3호중 “월평균 50만원” 을 “전국을 기준으로 월평균 50만원” 으로 하고,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신고자의 주소가 영등포구가 아닌 경우

[별표1]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제 정 안
제2조 구청장은-----	제2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8조 ①주민신고에 의하여 적발된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위반횟수와 관계없이 항상 1차 위반시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8조 ①(삭 제)
제9조 1.(생 략) 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와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도·소매업소에 A4규격(20mm x297mm)또는 1,000입방센티미터 이하의 종이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3.(생 략)	제9조 1.(현행과 같음) 2.<삭 제> 3.(현행과 같음)
제14조 ③-----지급한다.	제14조 ③ -----지급하고 현금 이외에 상품권 등 현물로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제1항 1. ~ 2. (생 략) 3.-----월평균 50만원을----- 4. ~ 7. (생 략) 8. <신 설>	제15조제1항 1. ~ 2. (현행과 같음) 3.-----전국을 기준으로 월평균 50만원을----- 4. ~ 7.(현행과 같음) 8.신고자의 주소가 영등포구가 아닌 경우

[별표1]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단위 : 만원)

과 태 료 부 과 대 상	과 태 료			포상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후)	
1. 1회용품을 사용 또는 무상제공하거나 재활용제품의 교환·판매 장소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때(법 제10조)				
가.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또는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1) 객실과 객석면적이 333제곱미터 이상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1,000인 이상의 집단급식소	50	100	200	10
(2) 객실과 객석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 333제곱미터 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300인 이상 1,000인 미만의 집단급식소	30	50	100	5
(3) 객실과 객석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100제곱미터 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집단급식소	10	30	50	3
(4) 객실과 객석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100인 미만의 집단급식소	5	10	30	0
나. 목욕장, 숙박업소(객실 7실 이상)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				
(1) 객실 50실 이상의 숙박업소 또는 영업장 총 면적 300평방미터 이상의 목욕장인 경우	50	100	200	10
(2) 객실 21실 이상 50실 미만인 숙박업소 또는 영업장 총 면적 300평방미터 이하의 목욕장인 경우	30	50	100	5
(3) 객실 20실 이하의 숙박업소인 경우	10	30	50	3
다. 대규모 점포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100	200	300	15
라. 영 제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중 백화점·전문점·할인점·쇼핑센터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재활용제품의 교환·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때	100	200	300	15

<p>마.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자 (다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제외한다)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환불 등에 대한 미고지등을 포함함)하거나 또는 합성수지 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p>				
(1) 매장면적이 1,000제곱미터이상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30	50	100	5
(2)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이상 1,000제곱미터미만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10	30	50	3
(3)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이상 165제곱미터미만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5	10	30	2
(4)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미만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자에 한한다)	3	5	10	0
<p>바.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사용한 때</p>				
(1) 매장면적이 333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50	100	200	10
(2)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이상 333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30	50	100	5
(3)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이상 100제곱미터미만인 경우	10	30	50	3
(4)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미만인 경우	5	10	30	0
<p>사.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중개업,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광고대행업, 교육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산업, 공연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합성수지재질로 도포 또는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p>				
(1) 매장면적이 1,000제곱미터이상인 사업자	50	100	200	10
(2)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이상 1,000제곱미터미만인 사업자	30	50	100	5
(3)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이상 165제곱미터미만인 사업자다.	10	30	50	3
(4)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미만인 사업자	10	10	30	0
<p>아.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에서 체육, 공연 등의 행사를 개최하는 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p>	50	100	200	10